

미국 및 EU 지역의 투자 및 세무 정책 변화 대응

Tax Updates on US and
EU Investment for Korean Companies



국내 기업의 미국 및 EU 투자 세무 업데이트

I.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세 방향에 따른 미국 세무 고려사항



1. 미국관세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시간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중국, 멕시코, 캐나다 및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율을 강하게 인상하는 추진력을 보여 왔으며,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 수단을 넘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분야를 초월하는 강력한 Leverage Tool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 관세율 인상 정책 발표 및 발효 시점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끊임 없이 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 이는 각국이 조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감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견도 존재함.

대상국가	2월 1일	2월 3, 4일	2월 10,11일	2월 27일	3월 4일	3월 5일	3월 7일	3월 12일	3월 27일	4월 2일	4월 9일
Rest of the World	-	-	-	-	-	-	-	-	-	기본관세 : 전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 +10% 관세 부과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
중국	+ 10% 관세 부과 발표	+ 10% 관세 발효 (총 10%)	철강·알루미늄 + 25% 관세 부과 발표	+ 10% 관세 부과 발표	+ 10% 관세 발효 (총 20%)	-	-	철강 알루미늄 + 25% 관세 부과 발효	자동차·부품 + 25% 관세 부과 발표	국가별 상호관세 :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세 부과	즉,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본관세만 부과되나, 중국에 대해서는 총 125% 관세 발효
캐나다, 멕시코	+ 25% 관세 부과 발표	+ 25% 관세 부과 유예	기존 조치 강화 (예외 규정 해제, 파생제품 추가)	-	+ 25% 관세 발효	자동차 + 25% 관세 부과 1개월 유예	USMCA 적용 물품 + 25% 관세 부과 유예	-	-	중국 : 34% 한국 : 25% 일본 : 24% EU : 20% 등	-

향후 고려 필요 사항

- 관세 인상 대비 기업 차원 대응안 모색
- 미국 vs 개별 국가 간 협상 동향 파악
- 관세 인상 관련 미국내 의견 파악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련 발효 및 상무부의 과세방안 동향 파악

*3월 27일 : 자동차 및 부품 추가 관세 부과 발표(자동차는 4월 3일부터 부과 발효, 부품은 5월 3일 이내 발효 예정)
 *4월 2일 및 4월 9일 : 기본 관세는 4월 5일부터 부과 발효, 국가별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향후 90일간 유예
 *4월 14일 :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추후 발표 예정. 캐나다 및 멕시코 내 자동차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여,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시사.

1. 미국관세 : FOB 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 Risk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가격 경쟁력 등 확보를 위해 FOB 가격 인하 등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임의적으로 FOB 수출가격을 인하할 경우 관세 Risk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미국에서 인정 가능한 제도를 통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이 수반되어야 함.

美的 관세 부과에 따른 거래구조 변화 예시

기존 FOB 가격 = USD 100 / 추가 관세 25% 부과 가정



FOB 수출가격 임의 조정 시 발생 가능한 Risk

1 특수관계가 가격을 왜곡시킨 것으로 보아 수입 신고가격 불인정

-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 등이 거래가격을 왜곡(임의적 인하)시킨 것으로 보아 관세 관점에서의 수입 "신고가격(=Invoice 가격)" 부인
- 신고가격 부인에 따른 관세 증가 등 불확실성 증가

2 FOB 가격 인하를 "비정상적 할인"으로 보아 수입 신고 가격 불인정

- FOB 인하 조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격 인하 분 만큼 관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할 가능성 有
- 가산세 부담이나 Reasonable Care 의무 해태에 따른 불이익 가능

3 FOB 가격 인하 시 FTA 특혜 세율 적용 배제 가능성 존재

- 특정 원산지결정기준(예: RVC 공제법)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국내 부가가치비율이 감소하여 FTA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본 세율(예: 8%)이 추가 적용됨

1. 미국관세 : 이전가격 측면에서의 Risk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측면에서 다음의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01 | 관세 영향에 따른 이익률의 변화

- 보편관세 등의 도입 시 미국법인의 이익률에 직접적인 영향
 - 판매가의 조정이 없는 경우 미국법인의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므로 수익성 악화
 - 이전가격 측면에서 적정 이익률 수준 유지가 어려움
- 보상조정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관세 영향을 한국 본사 또는 미국법인 중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필요
 - 만일 본사에서 관세 영향의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이익률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본사로부터의 기중 매입가격 조정 또는 연말 보상조정 (year-end adjustment) 고려
 - 한-미 양국 측면에서의 risk 최소화를 위한 이전가격 정책 revisit 필요

02 |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간의 충돌

- 현지법인의 이익률 관리를 위하여 재화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관세와의 충돌 발생
-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법인의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 관세측면에서의 risk 증가 가능

03 | 이전가격 분쟁의 증가 (MAP)

- 관세 부담 주체에 대한 한-미 과세당국간 입장 차이
 - 관세 영향에 따라 미국법인의 이익률이 감소하는 경우 미국 과세당국에서의 challenge 가능성 증가
 - 미국법인의 이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본사의 판매가를 낮추는 경우, 본사의 이익률이 감소하게 되므로, 판매가 조정의 적정성에 대한 한국 과세당국의 challenge 가능성 증가

Action Plan (이전가격)

- ✓ Target Margin 기준 FOB 가격 설정을 위한 정교한 이전가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 관세 부담 주체에 대한 한국 과세당국의 challenge 대응을 위해 쌍방 APA 추진 고려
 - 상호관세/보편관세는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다수 기업에 공통된 이슈이므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구조적 해결 모색

1. 미국관세 : Action Plan 준비의 출발점 - CBP 유권해석 및 과세가격 조정 제도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미국 수입 물품에 대한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권해석의 대상에는 신청자의 개별 case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인정 여부를 포함하고 있음. 한편, 美 수입 신고 제도는 아래와 같이 신고 정정(Post Summary Correction)과 정산(Reconciliation) 제도를 통해 수입가격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음.

1. CBP 유권해석

- **목적:** 수입가격이 미국 관세 목적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CPB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Risk를 사전 예방
- **주요 고려 사항:** 기존 CBP 유권해석인 HQ Ruling W548314 (2012년 5월 16일 생산) 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아래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미국 관세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음

2. 과세가격 조정 제도

- **목적:** 당초 수입가격을 회사의 이전가격 정책에 맞추어 수정해야 하는 경우, 관세 납부/환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의 이전가격 정책에 부합하는 과세가격 정책을 운용 가능

1. 신고 정정 (Post Summary Correction)

- 납세신고 및 관세 완납 후 가격 정정 허용
- 정정 기한: 청산 예정일로부터 15일 전 (약 10개월)
- 제한: 소송, CBP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2. 정산 (Reconciliation)

- 수입 후 21개월 이내에 가격 정정 허용
- 수입 신고 단계에서 Recon 항목 신청 필요 (사후적용 불가)
- 제한: 수량, 품명 등 가격 외 항목은 제외

- 특수관계자간 간 거래의 경우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후적 수입가격 조정 인정 (즉, 수입가격 하향 조정에 따른 관세 환급 가능)



Objective Formula
5가지 요건

- ① 수입 이전 이전가격 정책 문서화 여부
- ② 이전가격 정책을 소득세 신고 시 사용 여부
- ③ 이전가격 정책상 품목별 조정방법 규정 여부

- ④ 이전가격 조정금액의 회계 계상 여부
- ⑤ 기타 이전가격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단, 위 5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진행됨

1. 미국관세 : Objective Formula 5가지 요건

Objective Formula 5가지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1 이전가격 결정 정책 문서화

이전가격(TP) 정책이 수입 이전에 작성되고, IRS code 482(미국 연방세법 이전가격 제도)를 반영하여야 함

2 소득세 신고

미국 납세자가 TP 정책을 소득세 신고 시 사용하고, 해당 정책으로 인한 조정이 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야 함

3 대상 품목별 고려

TP 정책이 **물품별로** 이전가격 및 이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명시해야 함

인정 사례

- 제품군별 매출총이익률이 전체 매출총이익률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는 등 사전에 명확히 이전가격 조정 정책 및 방법론이 명시된 경우
- 모든 적용 물품에 대한 조정 비율 계산 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불인정 사례

- 세부적인 사후조정에 대한 정책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단순 정상가격 원칙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
- 개별 단가가 어떤 계산방법으로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조정 전/후 가격 비교 자료 제출만으로는 부족

4 기록

회사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조정분에 대하여 장부(ex. Debit and Credit Note) 상에 표시할 것

5 기타 영향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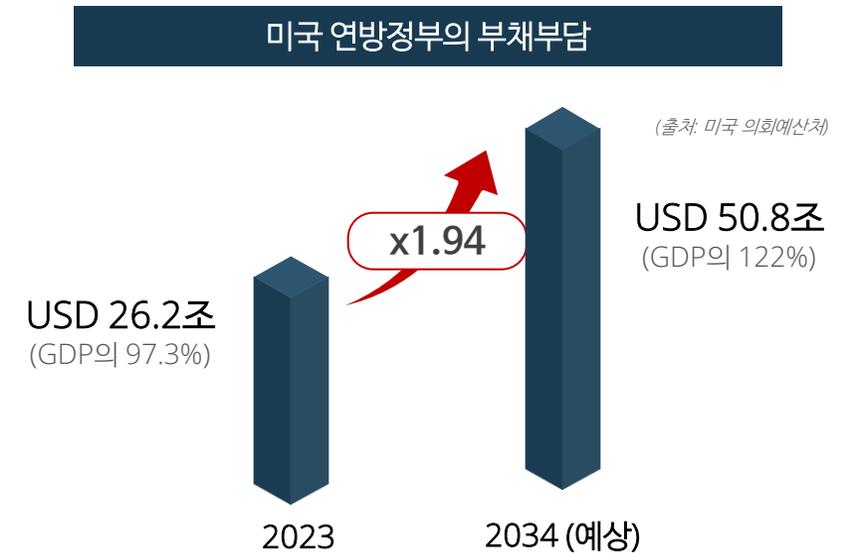
해당 공식 외에 CBP로부터 이전가격을 인정받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없을 것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merica First 보호주의 정책은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자국 기업 우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 조세 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merica First 보호주의 정책은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자국 기업 우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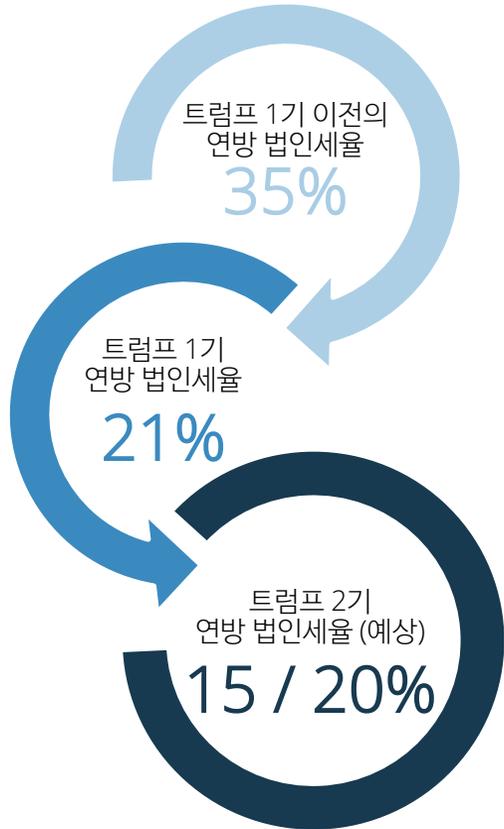


-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다수 정책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공화당의 세법 개정 추진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 내외의 조세 체계 전반에서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폐지를 논의 중에 있으나, 이는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적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OECD의 필라 1 & 2 제도 합의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자주적인 국제조세 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Tax Cuts and Jobs Acts (이하 "TCJA") 연장 등의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의 의회 통과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3. 연방 법인세율 인하 정책

2024년 9월 5일 유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 감면 정책으로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법인세 정책 전망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TCJA 도입을 통해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영구적 인하함.
 - 2024년 9월 5일 유세 연설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 법인세율을 **20%로 추가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미국 내 제조기업의 15% 세율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나, 2017년 TCJA 도입으로 폐지된 **국내 생산활동 감면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이하 "DPAD")** 규정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DPAD 규정은 기업의 적격 활동(제조, 생산, 건설 및 개발 등)으로 인한 소득 중 일부를 세무상 공제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해외 생산을 방지하고 해외 생산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제도임.

- 법인세 인하 및 감세 정책은 의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당내 매파나 민주당의 반대, 예산조정절차 등의 변수로 인해 정책 추진에 불확실성이 존재함.
- 특히,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는 미국 의회예산처와 재무부 장관에 의해 이미 제기된 바 있으므로, **향후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4. TCJA 일몰조항 연장 정책 (1/2)

2024년 9월 24일 유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부터 TCJA 정책이 일몰 됨에 따라, 미국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보너스 감가상각 및 연구개발비 감가상각 연장과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FDII 소득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보너스 감가상각

TCJA 도입으로 인해 2017년 9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적격 자산에 대해 세무상 100% 감가상각을 즉시 적용하여, 취득연도에 모두 공제받는 제도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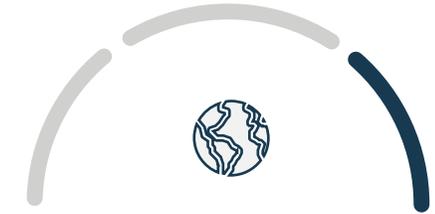
- ✓ 적격 자산 : 세무상 내용연수가 20년 이하인 MACRS 감가상각법 자산으로서, 사업 목적으로 취득 및 사용되어야 함.



연구개발비 감가상각

2021년까지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무상 비용으로서 지출연도에 공제하였으나, TCJA 도입으로 인해 2022년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자본화하여 5년 (국내) 또는 15년 (국외) 간 세무상 감가상각하는 제도로 변경됨.

- ✓ 국내외 연구개발비 :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한 연구개발비용도 포함됨.



해외무형자산 소득공제

미국 법인이 재화 및 용역을 해외로 수출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공제함으로써, 미국 법인의 수출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됨.

- ✓ [해외무형자산소득공제 (FDII) 산식]

$$= \frac{\text{간주무형자산소득 (DII)}}{\text{총 공제가능소득 (DEI)}} \times \frac{\text{해외총 공제가능소득 (FDDEI)}}{\text{총 공제가능소득 (DEI)}}$$

- FY25 까지 : 연방 법인세 실효세율 13.125% (FDII 소득 공제율 37.5%)
- FY25 이후 : 연방 법인세 실효세율 16.406% (FDII 소득 공제율 21.875%)

개념

현행

예상안

(취득일 기준) 2022년까지 : **100%**
이후 2027년까지 **매년 20% ↓**

미국 내 연구개발비의 경우 **5년**
(미국 외 연구개발비는 15년)

보너스 감가상각 규정이
재도입될 가능성 높음

연구개발비 전액을 지출연도에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 높음**

FDII 소득 공제율 인상을 통한 실효세율 인하
(16.406% → 13.125%)

4. TCJA 일몰조항 연장 정책 (2/2)

트럼프 1기 행정부는 GILTI 및 BEAT 규정 등을 통해 해외 저세율 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일부 사항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무형자산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이하 "GILTI")

미국 법인이 피지배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CFC")에 소득을 이전하고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CFC: 미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주식 또는 주식 가치의 50% 이상 보유

- 1) 사업연도말 CFC 지분 10% 이상 보유 시, CFC의 과세소득에서 간주유형자산소득 (CFC의 사업용 감가상각대상자산가액의 10%) 및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GILTI 소득으로서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함.
- 2) 단, 각 과세연도 별 정해진 GILTI 소득 공제율에 따라 일부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CFC가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의 80% 한도로 GILTI 세액 산출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가능함.

FY25 : 연방 법인세 실효세율 10.5%

- 실효세율 = 연방 법인세율 21% X (1- GILTI 소득 공제율 50%)
- FY25 이후 : 연방 법인세 실효세율 13.125%로 상향
- 실효세율 = 연방 법인세율 21% X (1- GILTI 소득 공제율 37.5%)

GILTI 소득 공제율 인상을 통한 실효세율 인하 (13.125% → 12.5%)

세원잠식남용방지세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이하 "BEAT")

개념

미국 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들에게 이자, 사용료 및 경영관리 수수료 (이하 통칭하여 "세원잠식지급금")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미국 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적용대상

- 1) 다국적기업으로서 지난 3개연도의 평균 매출이 USD 5 억 이상이며,
- 2) 국외 특수관계자의 세원잠식지급금이 총 지급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

FY25 : BEAT 실효세율 10%

- 세원잠식지급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재계산한 과세표준에서 10%의 세율을 적용한 BEAT 세액과 기존 연방 법인세액을 비교하여, BEAT 세액이 높을 경우에 초과분 납부

FY25 이후 : BEAT 실효세율 12.5%로 인상

예상안

BEAT 실효세율 유지 (12.5%)

국내 기업의 미국 및 EU 투자 세무 업데이트

II. EU 세제 동향 및 업데이트에 따른 세무 고려사항



1. EU 행정부 입법 예고

EU 행정부에서 입법하였거나 입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조치들 중 다국적기업은 다음의 원천세 환급청구 절차 간소화, 디지털시대 ViDA 패키지, 그리고 DAC9의 도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 앞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세 환급청구 절차 간소화 (FASTER)

- 투자소득 원천세 신속 환급 시스템 도입
 - ✓ 원천징수 시, 적정세율 적용 및 신속 환급 시스템
- 공인 금융중개기관(CFI) 국가 등록제
 - ✓ CFI는 원천세 환급절차 지원 역할
 - ✓ 대형 금융기관 및 중앙예탁기관 자동 등록
 - ✓ 기타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등록 가능
- 표준화된 보고 의무 도입
 - ✓ CFIs는 투자자 정보, 감면세율 적용 자격, WHT 약용 가능성 등을 당국에 보고
 - ✓ 이를 통해 금융 거래 흐름 및 세금 환급 적격성을 세무 당국이 모니터링
- EU 공통 디지털 거주자 증명서(eTRC) 도입
 - ✓ 투자자의 세무상 거주지국 확인 절차 간소화



디지털 시대 VAT ("ViDA" 패키지)

- 전자세금계산서 및 디지털 신고 의무화
 - ✓ 2030년 7월 1일부터 적용 (EU 내 국경 간 B2B 거래)
- 단일 VAT 등록 도입
 - ✓ 국경 간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은 단일 회원국에만 VAT 등록하면 됨
- 플랫폼 경제의 VAT 과세 강화
 - ✓ 비 EU 공급자의 상품 판매에 대한 플랫폼의 VAT 책임 확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 ✓ 단기 숙박(최대 30박) 및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VAT 의무 도입 (2028년 7월 1일부터 선택적 적용, 2030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



DAC9 Proposal

- Pillar 2 관련 정보 보고 및 교환 절차 개선
 - ✓ 글로벌최저한세 대상 법인의 구성 기업은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납부세액정보신고서 (TTIR)를 제출
- TTIR 제출 및 정보 교환 일정
 - ✓ 첫 TTIR 제출 기한: 2026년 6월 30일
 - ✓ 회원국 간 TTIR 정보교환 기한: 2026년 12월 31일
- 회원국 간 및 제3국과의 정보 교환 체계 마련
 - ✓ 회원국 간 TTIR 정보 교환을 위한 EU 차원의 프레임워크 제공
 - ✓ EU 외 국가와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각 회원국이 적절한 국제 협정 체결 필요

2. 도입 논의 중인 EU 세제

다음의 내용은 EU 입법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 다국적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입니다.



공통 법인세 체계 (BEFIT)

- 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 (“BEFIT”)에 제안의 주요 내용
 - ✓ EU 내 활동하는 기업 그룹을 위한 공통적인 법인세 체계를 구축
- 현재 진행상황
 - ✓ 그 취지와 목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나 2024년 동안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음
 - ✓ 각 내용에 대해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 EU 집행위원회의 우선 논의 과제로 삼고 있어 2025년에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본사 소재지국 세무규정 준용 (HOT)

- Head of Tax System (“HOT”) 제안의 주요 내용
 - ✓ 특정 EU 기반의 중소기업이 다른 회원국에서 고정사업장을 운영할 때 본사 소재국의 세무 규정을 따름
 - ✓ 과세 시, 세율은 고정사업장 소재지에 따름
 - ✓ HOT 제안은 BEFIT과 함께 EU 내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완적 조치로 설계
- 현재 진행상황
 - ✓ 유럽 의회는 HOT제안을 지지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 ✓ 회원국들은 행정편의 및 세수 감소 우려 표명



Energy Tax Directive (ETD)

- Energy Tax Directive (“ETD”)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기후 변화 목표와 에너지 효율성을 반영한 세제 개정이 핵심
 - ✓ 과세 구조 개편:
 - 에너지 제품과 전기에 대한 과세 조정
 - 연료와 전기의 에너지 함량 및 환경 성과에 기반한 세율 신규 도입
 - ✓ 과세 대상 확대:
 - 새로운 제품을 과세 대상에 포함
 - 기존의 면세 항목과 세금 감면을 일부 제거
- 2021년 이후 진행 상황
 - ✓ EU 특별 입법 절차에 따라 협의 진행 중

3. DAC (“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EU DAC 시리즈는 EU 국가 간 행정협력 지침으로 국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 DAC6 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Action Plan 12 - Mandatory Disclosure Rules를 EU내에서 법제화하기 위해 DAC1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Directive로서 **국제거래 시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필수 정보 공개 및 해당 정보의 자동정보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지침을 다루고 있음.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



거래와 관련한 중간 관계자 (Intermediary)들로 하여금 유해 조세구조 (harmful tax structure)를 고안하고 상품화하며, 실행하는 것을 억제



역외를 활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여 “EU Single Market”의 기능을 향상

DAC 7 (2011/16/EU)

DAC 7 (2011/16/EU)

- Digital platform을 통해 사업하는 특정 Seller의 특정 활동 (e.g. 부동산 임대, 인적용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정보를 자동교환
- 2023년 1월부터 시행

DAC 8 (2023/1114/EU)

DAC 8 (2023/1114/EU)

- 가상자산 (crypto-assets)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포함
- 2026년 1월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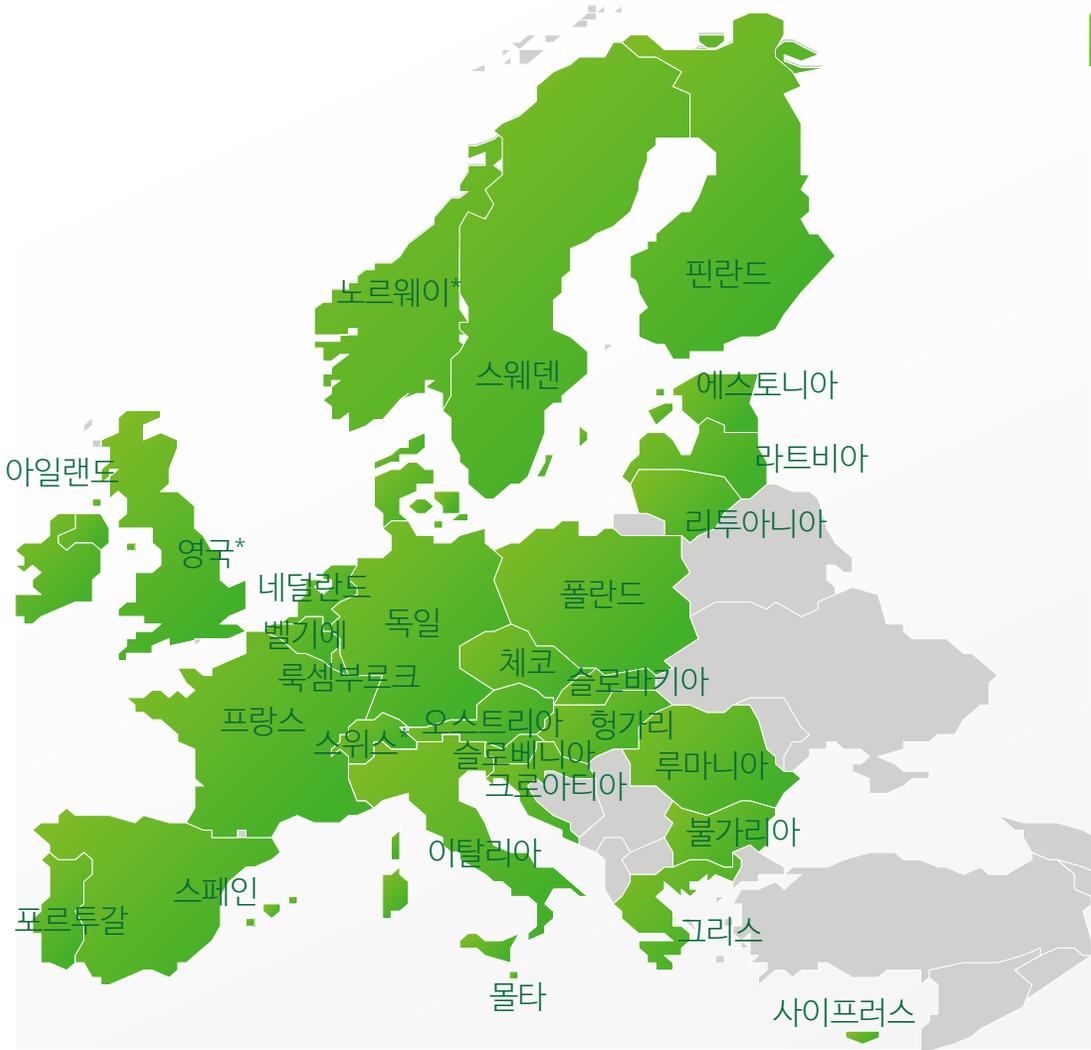
DAC 9 (Proposal)

DAC 9 (Proposal)

-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대상 그룹의 기업은 추가납부세액정보 (Top-up Tax Information Return, “TTIR”)를 제출해야 함.
- 2026년 6월 30일까지 최초신고서 제출

4.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현황 (EU 국가)

대부분의 EU 회원국가들은 2024년 과세기간부터 글로벌최저한세규정의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과세기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p>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비회원국인 영국, 노르웨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산입규칙을 도입 및 입법하였으며 2024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EU 비회원국인 스위스와, EU 회원국 중 폴란드, 슬로베니아는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리투아니아는 현재 입법 준비중으로 2026년부터 도입 예정. 에스토니아, 몰타와 슬로바키아는 글로벌최저한세 및 적격소재지국추가과세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EU 법령에 따르게 됨. (2030년부터 적용)
<p>소득산입보완규칙 (Undertaxed Payment Ru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비회원국인 영국, 노르웨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 및 입법하였으며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스페인만 다른 EU 회원국들에 앞서 2024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적격소재지국추가과세 (Qualified Domestic Minimum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적격소재지국추가과세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국은 미도입) 폴란드는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5. EU 주요국 세제 업데이트

EU 주요국의 2025년 주요 세제 업데이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랑스**
- **법인세율:** 연매출이 €10억 이상인 기업에 대해 20.6%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며, €30억 이상인 기업에는 41.2%의 추가 세율 적용 (2025년에 한시적 적용)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CIR):**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시 특정 비용 제외, 운용비 계산시 적용 계산율을 43%에서 40%로 인하, 혁신세액공제율 30%에서 20%로 인하 등 세액공제 규정을 재조정하여 정부 추가 예산 확보
 - **주식환매 과세:** 2024년 10월 10일부터 주식 환매에 대해 8%의 세금 부과
 - **금융 거래세율 인상 (2025년 시행):** 금융 거래세율이 기존 0.3%에서 0.4%로 인상

- 영국**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 tax credit):** 2025년부터 연구개발비 신규 보고 체계가 마련됨. 과다환급액을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구제책 포함. 예술산업 분야에 핵심 성장 섹터 기업의 경우, 시각효과(visual effects)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 적용
 - **필라2 도입으로 글로벌기업그룹의 소속 기업은 25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관련 최초 등록을 완료해야 함 (one-time top-up tax registration)**

- 이탈리아**
- **결손금이월 규정 개정:** 대주주 변동 시, 주주 변동 사업연도 (주주변경 전/후 2년 포함) 에 해당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이 변동된 경우 “vitality test”를 충족해야 함. 그룹내 양수도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
 - **디지털세 개정:** 글로벌매출 €7.5억 이상인 기업 대상,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 서비스 등의 매출에 대해 3% 부과. 2025년부터는 디지털세 선납 제도가 도입되어 전기 디지털세액의 30%를 11월 30일까지 선납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디지털세 잔금을 5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함.

- 독일**
- **부가가치세 서비스 공급지:** 가상의 활동 및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급지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소재한 거주지 국가로 정함. (EU법과 일관성을 갖도록 개정)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는 사용자의 거주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핀란드**
-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시설 당 €5천만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설 투자, 탈탄소공정 추진 및 에너지효율화 투자, 탄소중립과 관련된 장비, 부품 및 소재 전략산업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기 등) 생산 투자에 대해 적격비용의 20% (€1.5억 한도)을 세액공제

- 포르투갈**
- **법인세율 인하:** 31.5%에서 30.5%로 1% 인하 (2025년 과세기간부터)

유럽 과세 공통 키워드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도입

다수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시행**. 글로벌기업이 소재한 저세율(15%미만) 과세 국가 추가세액 발생 가능

실질과세 강화

유럽 전반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이 없는 법인의 감세 구조 차단 움직임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프랑스, 이탈리아 등 **e-인보이싱 의무화** 준비 또는 시행 중

원천세 및 반조세회피 조치 강화

이자·배당·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및 구조적 우회에 대한 규제 강화 중

국내 기업의 미국 및 EU 투자 세무 업데이트

III.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단계별 세무 고려사항



해외 투자 시 단계별 세무 고려사항

해외 진출 고려 시에 Tax가 주된 고려사항은 아닐 수 있으나, 투자 초기 단계부터 동시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투자

- 투자 성격 및 형태에 따른 구조 검토
 - 해외 인수 vs 신규 투자
 - 현지 entity의 세무상 형태
 - 직접 투자 vs 간접 투자
 - 한국 및 해외 지주회사 설립 여부
- 해외자회사 소재지국 및 국가내 지역 선정 (인센티브 등)
- Debt vs Equity
 -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 Interest deduction limitation rule
- 해외투자 관련 신고 및 공시사항, 향후 세무행정사항 등 확인

2

운영

- 운영 단계에서의 현지 법인세 검토
 - 현지 연결납세제도 유무
 - 미국: 연방 법인세 외에 특정 주에서 nexus 발생 시 주 법인세 신고 의무 발생
- 제공 용역에 따른 소득 구분 (사용료 / 사업소득)
 - 소득 분류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금액이 상이하어, 유효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본사로 이익 송금 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및 제한세율 등 확인
- OECD Two Pillar Approach
 - Pillar One / 과세권 배분
 - Pillar Two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3

철수 (Exit)

- 주식양도 vs 자산양도
 - 현지세법 및 조세조약의 따른 과세 여부 검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여부)
 - 주식 / 자산 가치평가 및 거래세 부과 검토
- 특수관계자 (본사)와의 채무면제 이익에 따른 과세 이슈 파악
- 해외 자회사의 현금을 활용한 향후 전략
 - 본사 회수 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및 제한세율 등 확인
 - 기존 투자국 / 제 3국으로의 재투자 시, 최적의 투자 구조 및 방안 검토
- 해외 투자 철수에 따른 외국환거래 신고 및 세무행정사항 등 확인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